

수입 신용장 재개설등에 따른 의뢰 및 중계에 관한 약정서

(이하 ‘갑’이라 칭함)과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, Seoul Branch(이하 ‘을’이라 칭함)는 수입 신용장 재개설등에 따른 의뢰 및 중계에 있어 아래 사항을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1. 개설 신용장 내용

- 개설 일자 :
- 개설 의뢰인 :
- 개설 금액 :
- 지급 기간 :

2. 신용장 재개설에 관한 사항

- ‘갑’은 위 신용장 개설을 위한 신용장 개설 신청서(‘을’의 소정 약식)에 개설 의뢰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거나
- ‘갑’은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개설요청을 받고 ‘을’에게 스위프트 전문으로 재개설요청을 함으로써, ‘갑’은 신용장개설신청서(‘을’의 소정양식)상의 개별약정이 적용됨을 승인하며,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신용장개설 신청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개설의뢰인이 ‘을’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.
또한 ‘갑’은 ‘을’이 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화물 선취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 신청서에 따로 기명 날인하지 아니하더라도 개설 의뢰인이 화물 선취 보증서 발급 약정에 의하여 ‘을’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도 연대하여 보증한다. 이 경우 ‘갑’은 ‘을’이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예치 받은 화물 선취 보증서 발급 보증금(Marginal Deposit)을 개설 의뢰인의 ‘을’에 대한 다른 채무에 우선 충당함에 동의하며 신용장 개설 신청서 및 화물 선취 보증서 발급 신청서에 의한 채무를 부담한다.

3. 신용장의 결제

일람 지급 어음에 대해서는 서류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, 기한부 어음 또는 연지급 금융에 대해서는 만기일에 결제 대금 및 환가료를 개설 의뢰인이 ‘을’에게 직접 납입한다. 어떠한 이유로든지 개설의뢰인의 결제가 동 기일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, 그 사실을 통보 받은 ‘갑’은 3영업일 이내에 지연 이자와 함께 ‘을’에게 지급한다.

4. 수수료등

- ‘갑’은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징수한 수입 보증금 및 제수수료(개설 수수료 및 Term Charge 등)의 1/2를 개설 의뢰인이 ‘을’에게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한국 외환은행 본점에 있는 ‘을’의 원화계좌에 이체 지급한다.
- ‘갑’은 ‘을’이 신용장의 개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우편료 및 전신료 전액을 (1)과 같은 방법으로 ‘을’에게 지급한다.
-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, ‘을’은 신용장 결제시 또는 연지급 금융의 만기 결제시 발생하는 외환 매매 이익의 1/2를 한국 외환은행 본점에 있는 ‘갑’의 구좌에 이체 지급한다.
- 코레스 수수료 및 인수 할인 수수료 등은 개설 의뢰인이 실제 차기된 금액을 원화로 환가료와 함께 전액 ‘을’에게 지급한다.

5. 통지

‘을’은 신용장 개설 후 동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로부터 접수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신문과 서신의 내용을 ‘갑’에게 통보한다.

6. 법규준수와 제재

‘갑’은 다음 사항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.

- ‘을’은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재 또는 “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” 등과 같은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(법규준수 조치)를 취할 수 있으며, 기타 HSBC그룹 계열사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. 이러한 법규준수 조치에는 다음 명시된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다.

(a) 다음 명시된 사항을 거절:

- (i) 무역 서비스 발행, 개신, 연장, 이전 및 양도
- (ii) 청구금 지급 또는
- (iii) 제재 또는 국내외 법규에 어긋나는 무역 서비스 및 지시서 처리

7. 기타사항

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간 관례 및 상호 합의에 따른다.

(갑)

(을)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
Corporation Limited. Seoul Branch